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10 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김예지·최형두·박덕흠

김승수 · 엄태영 · 장동혁

진종오 · 장종태 · 김소희

고동진 · 서명옥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보도(步道)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,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,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및 제

13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정류소의 안전 확보) 정류소는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(步道)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보도에 설치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제13조의3(정류소의 실태조사 등) ① 시·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정류소의 설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대중교통시설의 설치·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

있다.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・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3조의2(정류소의 안전 확보)
	정류소는 「도로교통법」 제2
	조제10호에 따른 보도(步道)에
	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여
	건 등으로 인하여 보도에 설치
	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
	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
	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제13조의3(정류소의 실태조사 등)
	① 시・도지사는 매년 1회 이
	상 정류소의 설치현황에 대한
	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	② 시・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
	실태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
	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	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시설
	의 설치・관리주체에게 필요한
	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
	<u>다.</u>
	③ 시・도지사는 매년 제1항
	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
	과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국토

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